

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

Registr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

상호 또는 성명 <i>Trade Name or Registrant</i>	삼성테크윈(주)
기기 명칭 <i>Equipment Name</i>	Thermal Night Vision Camera
기본모델명 <i>Basic Model Number</i>	SCB-9080
파생모델명 <i>Series Model Number</i>	
등록번호 <i>Registration No.</i>	KCC-REM-STW-SCB9080
제조사/ 제조국가 <i>Manufacturer/ Country of Origin</i>	삼성테크윈(주)/한국
인증연월일 <i>Date of Registration</i>	2011년(Year) 07월(Month) 07일(Date)
기타 <i>Others</i>	

위 기기는 「전파법」 제58조의2 제3항에 따라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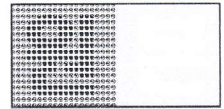
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registered under the Clause 3, Article 58-2 of Radio Waves Act.

2011년(Year) 07월(Month) 07일(Date)

전파연구소장

Director General of Radio Research Agency
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, Republic of Korea

※ 적합등록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"적합성평가표시" 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.
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

< 적합성평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안내 >

전파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한 기기가 유통·판매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.

1.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는 해당 제품과 포장에 반드시 적합성평가 표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. (전파법 제58조의2제6항)

○ 1차 위반 시는 시정명령, 2차 및 3차시 생산·수입·판매 또는 사용중지(1~2개월)

2. 적합성평가기준 관련 변경, 파생모델명, 제조자, 상호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(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5조)

○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 : 1차 위반 시는 시정명령, 2차시 생산·수입·판매 또는 사용중지(2개월), 3차시 적합성평가의 취소

○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: 1차, 2차 및 3차 위반 시 각각 시정 명령

3. 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일부 부품을 무단변경 또는 제거하여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기를 유통하거나, 시험과정 중 기기의 회로 및 구조를 보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보완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기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○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4. 방송통신기자재 사후관리 시험결과 부적합기기는 시정 여부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의 확인 후 유통할 수 있습니다.

○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2차시는 생산·수입·판매 중지 또는 사용중지(2개월), 3차시 적합성평가의 취소